

2026년 무주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지원 사업 공고

『무주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』 제3조에 따라 2026년 무주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2026. 1. 13.

무 주 군 수

1. 용자규모 및 대출기관

- 용자규모 : 20억원
- 지원내용 : 무주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대출(최대 3천만원 및 이차보전금 지원(연 5%, 5년 이내))

2. 지원대상

- 무주군에 사업장을 두고 3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으로, 최근 5개월 이내 연체 대출금 보유사실이 없어야 함
- * 소상공인 : 「소상공인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

- 1. 광업, 제조업, 건설업 및 운수업 :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
- 2. 그 밖의 업종(도·소매업, 음식점업, 숙박업 등) :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

○ 지원 제외대상

- 태양광 및 신용보증 제외 업종
- 휴·폐업 신고를 하였거나 군수가 사실상 휴·폐업중이라고 인정하는 업체
- 중소벤처기업부 또는 전북특별자치도의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기지원 받은 경우

3. 지원 한도 및 이차보전 지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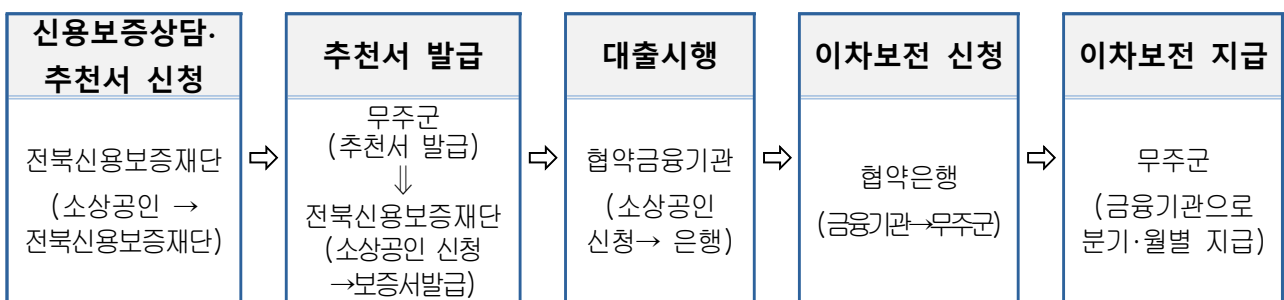
- 대출한도액 : 금30,000,000원(금삼천만원)
- 용자기간 :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 또는 거치기간 없이 5년 원금균등분할상환
- 이차보전 : 이자 최대 5.0% (5년 이내) ※ 5.0% 초과분의 이자는 본인부담
- 협약금융기관 : NH농협은행 무주군지부, 전북은행 무주지점, 무주반딧불신협, 설천신협, 무주안성신협, 무주새마을금고, 설천새마을금고
- 신용보증수수료 : 대출금의 1%(본인부담)

4. 신청방법

- 신청기간 : 2026. 1. 19. ~ 자금소진 시까지
- 접수처 : 전북신용보증재단 무주출장소 및 무진장지점(진안)
 - 무주출장소(전북은행 무주지점 내 위치) : 매주 목요일 9:30~12:00
 - 전북신용보증재단 무진장지점 : 평일 09:00~16:00

※ 전북신용보증재단(☎433-8402/8405)에서 신청·접수 해주시기 바랍니다

- 신청절차



- 구비서류 : 신용보증 추천서(신용보증 신청서 겸용), 사업자등록증명, 사업장의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(등기부등본 또는 임대차계약서), 주민등록 등·초본, 금융거래확인서, 신용정보 제공 및 조회 동의서, 소상공인 융자금 및 이차보전금 지원 신청서

5. 지원중지(환수)

- 근거 : 「무주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」
- 이차보전금 지원중지 및 환수
 - 1) 각종 소상공인 지원 자금을 중복해서 지원받는 경우
 - 2) 국가 및 전북특별자치도로부터 정책적으로 이차보전이 포함되어 있는 소상공인 지원 자금을 받는 경우
 - 3) 거짓자료를 제출하여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을 받은 것이 판명 되었을 경우
 - 4) 융자금을 목적 외 사용하였을 경우
 - 5) 사업장을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경우
 - 6) 사업장을 무주군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였을 경우
 - 6) 그 밖에 사업수행을 위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

6. 기타사항

신청 관련 문의사항 전북 신용보증재단 무진장지점(☎433-8402/8405)
금융기관 문의사항 농협은행 무주군지부(☎320-3103),
전북은행 무주지점(☎324-5210), 무주반딧불신협(☎322-3009),
설천신협(☎324-8155), 무주안성신협(☎323-0428),
무주새마을금고(☎322-4773), 설천새마을금고(☎324-7701),
무주군청 산업경제과 지역경제팀(☎320-2357)

- 붙임 1. 특례보증 제한 업종 1부
2. 신청서 각 1부.

붙임 1**보증 제한업종**

표준 산업분류	업종
56211	담배, 주류 중개업
56212	골동품, 귀금속 중개업
68	있담배 도매업
91121	주류 도매업
91242	담배 도매업
91291	모피제품 도매업(단, 인조 모피제품 도매업 제외)
91249	총포 도매업
9612 중	화약, 폭약 도매업
46102 중	총포 소매업
46109 중	예술품 및 골동품 소매업
46209 중	노점 및 유사 이동 판매업
46333	기타 무점포 소매업(통신판매업 포함)
46416 중	계약배달 판매업
64	금융업
65	보험 및 연금업
66	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
75993	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
	다단계판매업. 다만, 「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 제6호의 다단계판매자가 동조 제5호에서 정한 다단계판매(업)를 영위하는 경우는 제외 업종을 변형하여 운영되는 도박·향락 등 불건전 업종, 기타 국민보건·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·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앙회장이 지정한 업종

